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 2009. 12. 29.

개정 : 2014. 8.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및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및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부서장,팀장) 및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 및 부패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유용 또는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이상인 경우
2. 공금횡령·유용 또는 금품·향응수수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5.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거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이 내부징계기준에 의거 해임이상인 경우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 및 부패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라 함은 범죄 및 부패행위자가 사실관계를 시인한 경우를 말하며, 범죄 및 부패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 및 부패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 및 부패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 및 부패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 및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등)징계처분결과를 공사홈페이지(외부적발에 의한 경우), 사내 게시판(내부적발에 의한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직무관련 범죄 및 부패행위 보고				
보고자	성 명	(서명)	직 위 (직급)	
	소 속			
범죄 및 부패행위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범죄 및 부패혐의 내용				
증빙자료 목 록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관련)

범죄 및 부패행위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부패 혐의 요지	피고발자			고발 일시	고발 기관	조치결과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 “조치결과”에는 고발후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수사결과를 요약 기재